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133호

시행일자 2019. 5. 21.

수 신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입찰공고 및 세부평가기준 지침 시정 요청」 입찰참가자격 수정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하여 기실시한 내진성능평가용역(C034/C035) 용역 공고문에는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공고문에도 없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에 참여기술자 총 5명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요건이 건축구조분야 특급/고급으로 한정하여(참조1 : 아래 배점표 참조) 평가를 함으로써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 공고 및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차등점수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실제로 국방부에서 발주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053여개의 업체 중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고된 5건 (19-B051, 19-B052, HCS0026-1, UMM0367-1, UMM0360-1)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국방부 사업능력수행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요건을 국방부 세부평가기준대로 건축분야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점수를 차등 배점 작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원래 국방부의 공고문과 기준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학력+기술자격+경력+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 역량지수(ICEC)에 의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우리 협회는 국군재정관리단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1] 배점표

구분	인원(명)	해당분야	자격요건
책임기술자	1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로서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별표5 정밀안전진단분야’의 해당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2	건축구조 → 건축분야	특급 또는 기술사
		건축구조 → 건축분야	특급
분야별 참여기술자	2	건축구조 → 건축분야	고급
		건축구조 → 건축분야	고급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